

감정평가서

건명	이혜진 소유물건(2025타경11689)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서번호	A-2505-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신정호



(인)

감정평가액	사익이천칠백삼십육만사천육백사십원정(₩427,364,64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최양현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혜진 (2025타경1168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16	2025.05.13 ~ 2025.05.16	2025.05.19	
감정 평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729.84	토지	729.84	-	181,966,240
	건물	143.46	건물	143.46	1,540,000	220,928,400
	제시외건물	(25.4)	제시외건물	25.4	-	17,360,000
	제시외수목	(약70주)	제시외수목	약70주	-	7,110,000
합계						₩427,364,6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소재 "신휴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이해진 소유물(2025타경11689)』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현황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 외						
토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원/㎡)
	1	55-83	대	596.00	단독주택	생산관리	176,900
	3	55-86	도로	1,663.00 ×40151.6/498900	도로	생산관리	60,800
건물	기호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43.460	2015.12.30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5월 16일 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5월 13일 ~ 2025년 05월 16일 이고,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기타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거하였음.

나. 본건 기호(3)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해진外 수인 공유물로서, 이해진氏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부동산에 대한 평균가격을 의뢰지분 권리면적에 승하여 사정평가 하였음.

다. 본건 토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간이실측 후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하며, 경매 진행시 이에 대한 소유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기호(1)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기호 ㉢)이 소재하여,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의 수량 및 규격, 수종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니,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수량 및 수종 등에 대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기호(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물건(건물 및 수목)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 본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별지 "토지평가명세표" 상 비교란에 병기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식

(1)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의 3방식이란,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투자 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토지의 평가

(가) 주된 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나)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다)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의 평가

(가) 주된 방법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대상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나) 다른 감정평가방법

건물의 경우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함.

(다) 그 밖의 사항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주된 방법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라.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가. 토지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2)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25. 01. 0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아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음봉면 신희리 55-56	대	566.0	단독주택	생산관리	세각(가)	가장형 평지	184,3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1) 지가변동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율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 충청남도 아산시 】

【 단위 : % 】

구 분	기 간	계 산 식
생산관리지역	2025.01.01 ~ 2025.05.16	충청남도 아산시 (25.01.01~25.05.16) (생산관리) 2025.01.01 ~ 2025.03.31 : 0.234 2025.03.01 ~ 2025.03.31 : 0.073 $(1 + 0.00234) * (1 + 0.00073 * 46/31) \approx 1.00343$

- 2025년 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2) 시점수정치 결정

지가변동률 외의 시점수정시 참고자료인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에 대한 가격변동률로서 지역의 광역성 및 품목의 다양성 등을 내포하고 있어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가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 항목

평가대상토지 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함.

가로조건	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보도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경사도, 접면도로 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용적률 및 고도 제한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이용상태 및 효용성 등 기타사항

2) 개별요인 비교치

대상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A	1.00	1.00	1.00	0.90	1.00	1.00	0.900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상태 및 토지형상 등에서 개별요인 열세함.							
3	A	1.00	1.00	1.00	0.90	1.00	0.30	0.270
	평가대상 토지는 도로부지로 비교표준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 판례(2003다38207, 2004.05.14선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 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

비교사례(평가선례, 거래사례)와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간의 가격 격차율을 산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유사토지의 시세수준과의 가격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평가(매매)사례 기준 가격 [선례단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text{비교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가격 [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3)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지가수준(원/m ²)
평가대상토지 기호(1) 인근지역 유사토지	약 200,000 ~ 300,000원/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 충청남도 아산시 >

기호	구분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가	법원경매	음봉면 신휴리 5*-6*	대	생산관리	286,000	2024.01.05	
나	담보	음봉면 신휴리 3*-1*	대	생산관리	252,000	2022.08.26	
다	공매(국세,지방세)	음봉면 신휴리 5*-6*	대	생산관리	280,000	2023.07.03	
라	담보	음봉면 신휴리 3**-1*	대	생산관리	293,000	2024.07.17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① 비교사례 선정

상기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중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기호 < 가 >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A) / 비교사례 기호(가)

구 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격차율
	공시지가 (원/㎡)					
평가선례(가)	286,000	1.01425	1.000	1.100	319,083	1.72541
비교표준지(A)	184,300	1.00343	-	-	184,932	

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를 선정함.

시점수정

충청남도 아산시 (24.01.05~25.05.16) (생산관리)

2024.01.01 ~ 2024.01.31 : 0.089
 2024.02.01 ~ 2024.02.29 : 0.055
 2024.03.01 ~ 2024.03.31 : 0.075
 2024.04.01 ~ 2024.04.30 : 0.084
 2024.05.01 ~ 2024.05.31 : 0.095
 2024.06.01 ~ 2024.06.30 : 0.065
 2024.07.01 ~ 2024.07.31 : 0.075
 2024.08.01 ~ 2024.08.31 : 0.128
 2024.09.01 ~ 2024.09.30 : 0.114
 2024.10.01 ~ 2024.10.31 : 0.144
 2024.11.01 ~ 2024.11.30 : 0.105
 2024.12.01 ~ 2024.12.31 : 0.056
 2025.01.01 ~ 2025.03.31 : 0.234
 2025.03.01 ~ 2025.03.31 : 0.073

$(1 + 0.00089 * 27/31) * (1 + 0.00055) * (1 + 0.00075) * (1 + 0.00084) * (1 + 0.00095) * (1 + 0.00065) * (1 + 0.00075) * (1 + 0.00128) * (1 + 0.00114) * (1 + 0.00144) * (1 + 0.00105) * (1 + 0.00056) * (1 + 0.00234) * (1 + 0.00073 * 46/31) \approx 1.01425$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 (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00	1.00	1.00	1.10	1.00	1.00

비교표준지는 선례 대비 접면도로상태 및 토지형상 등에서 개별요인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최근 경기 동향 및 인근지역의 매매 동향과 상기 평가사례 및 인근지역 내 적정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 하였음.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호	그 밖의 요인 결정 보정치
A	1.72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84,300	1.00343	1.000	0.900	1.72	286,274	286,000
3	184,300	1.00343	1.000	0.270	1.72	85,882	8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비교 거래사례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 충청남도 아산시 >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m ²)	용도지역	거래금액(원)	거래단가 (원/m ²)	거래시점
a	음봉면 신휴리 3*-.**	대	799	생산관리	237,930,000	297,784	2023.12.10
b	음봉면 신휴리 5*-.**	대	560	생산관리	221,000,000	394,642	2023.07.28

2) 사례 선정 및 그 이유

상기 사례 중 비교적 최근 사례로서,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및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거래사례 기호 < a > 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나) 사정보정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 하며,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불필요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 평가대상토지 기호(1) / 비교사례 기호(a)

【 단위 : % 】

구 분	기 간	계 산 식
생산관리	2023.12.10 ~ 2025.05.16	충청남도 아산시 (23.12.10~25.05.16) (생산관리) 2023.12.01 ~ 2023.12.31 : 0.056 2024.01.01 ~ 2024.12.31 : 1.091 2025.01.01 ~ 2025.03.31 : 0.234 2025.03.01 ~ 2025.03.31 : 0.073 $(1 + 0.00056 * 22/31) * (1 + 0.01091) * (1 + 0.00234) * (1 + 0.00073 * 46/31)$ $= 1.01478$

- 2025년 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가치형성측면에서 유사하고 대체성이 인정되는 바, 지역 요인은 동일함.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대상토지 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a	1.06	1.00	1.00	0.90	1.00	1.00	0.954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의 계통성 등에서 우세하나, 접면도로상태 및 토지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토지 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3	a	1.06	1.00	1.00	0.90	1.00	0.30	0.286
본건은 도로부지로서 사례 대비 개별요인 열세함.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97,784	1.000	1.01478	1.000	0.954	288,284	288,000
3	297,784	1.000	1.01478	1.000	0.286	86,424	86,000

(3) 시산가액 조정 관련 사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평가대상 토지기호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단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토지단가	토지 감정평가단가 결정 (원/㎡)
1	286,000	288,000	286,000
3	86,000	86,000	8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건물

(1) 주된 방법(원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재조달원가 산정

재조달원가는 건물의 직접공사비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2024년 01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본건 신축시 표준적인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건물신축 표준단가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 기준일: 2024.01, 단위: 원/㎡]

분 류	용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01-01-05-09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 평지붕	3	1,749,000	50 (45~55)
01-01-05-09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 평지붕	4	1,515,000	50 (45~55)

2) 보정단가

구분	냉난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전력 설비	발전 설비	합계(원/㎡)
기호(2)	보정단가는 별도산정치 아니하고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평가함.						

3) 본건 재조달원가의 결정[(표준단가 + 보정단가) × 적용률]

구 분	본건 적용 표준단가	부대설비 보정단가	적용률(%)	적용 재조달원가 (원/㎡)
기호(2) 1,2층	1,880,000	-	100%	1,8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건물단가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수정을 하되, 건물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찰감가를 적용함.

기호	층	사용승인일	재조달원가 (원/㎡)	내용년수	경과년수	유효 잔존년수	잔존가치율	결정단가 (원/㎡)
2	1,2층	2015.12.30	1,880,000	50	9	41	41/50	1,540,000

※ 잔존가치율 = 잔존내용년수/(총)내용년수이며,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유효잔존년수를 적의 조정하였음.

(다) 건물의 감정평가액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원/㎡)	금 액(원)
기호(2)	1,2층	143.46	1,540,000	220,928,400

(2)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건물의 경우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함.

(3) 시산가액 조정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주된 방법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는 바, 주된 방법(원가법)에 따른 시산가액으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평가선례와 대상부동산의 제반 특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원/㎡)	금 액(원)	비 고
토 지	729.84	-	181,966,240	기호(1), (3)
건 물	143.46	1,540,000	220,928,400	기호((2)
제시외건물	25.40	-	17,360,000	기호 ㉠,㉡
제시외수목	약70주	-	7,110,000	기호 ㉢
감정평가액(합계)		-	427,364,640	

2. 결정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소재 "신휴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용도 및 규모, 시공의 정도, 위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표준적 이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평가선례 수준 및 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총 감정평가액

₩ 427,364,64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	대	생산관리지역	596	596	286,000	170,456,000	제시외물건 감안시 토지가액: 136,360,000.
2	동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길89-62	55-83	단독주택 (1가구)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1층 2층	78.86 64.6	143.46	1,540,000	220,928,400	1,880,000 x 41/50
3	동소	55-86	도로	생산관리지역	40,151.6 1,663x----- 498,900	133.84	86,000	11,510,240	이혜진 지분 (498,900분의 40,151.6)
소 계								₩402,894,640	
㉠	<제시외 건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	차양 (바닥 목재 데크 포함)	벽체이용 판넬지붕 (1층 소재)	(10)	10	식	5,500,000	실측사정
㉡	동소	55-83	창고 등	벽체이용 판넬지붕 (2층 소재)	(15.4)	15.4	식	11,860,000	실측사정
소 계								₩17,360,000	
㉢	<제시외 수목>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	수목	소나무, 측백나무 등	(약70주)	약70주	일괄	7,110,000	실측사정
소 계								₩7,110,000	
합 계								₩427,364,64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희리 소재 "신희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형태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3)은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토지)를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기호(1,3) 토지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간이실측 후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하며, 경매 진행시 이에 대한 소유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2)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 외벽: 외장판넬마감 등,
 - 내벽: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마감 등,
 - 창호: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 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 ㉠, ㉡ 및 제시외수목 기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간이실측사정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이에대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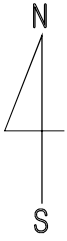
임대내역은 미상이며, 본건은 수차 방문하였으나 건물중 일부는 폐문부재로 내부상태는

건물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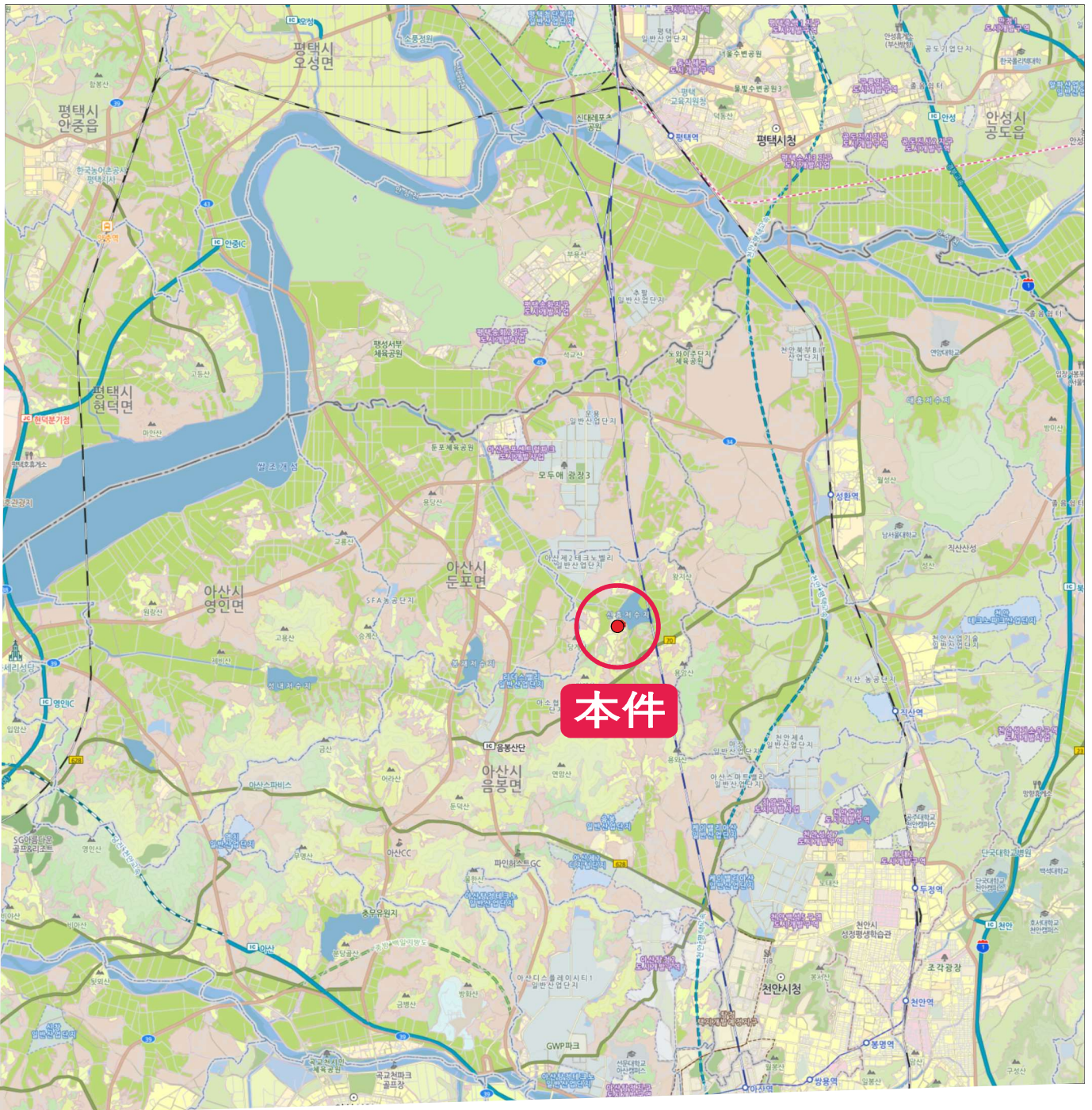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건축물대장상 내부도면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서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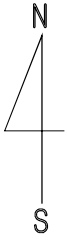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번지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길 89-62]
-----	---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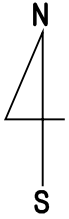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55-83번지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길 8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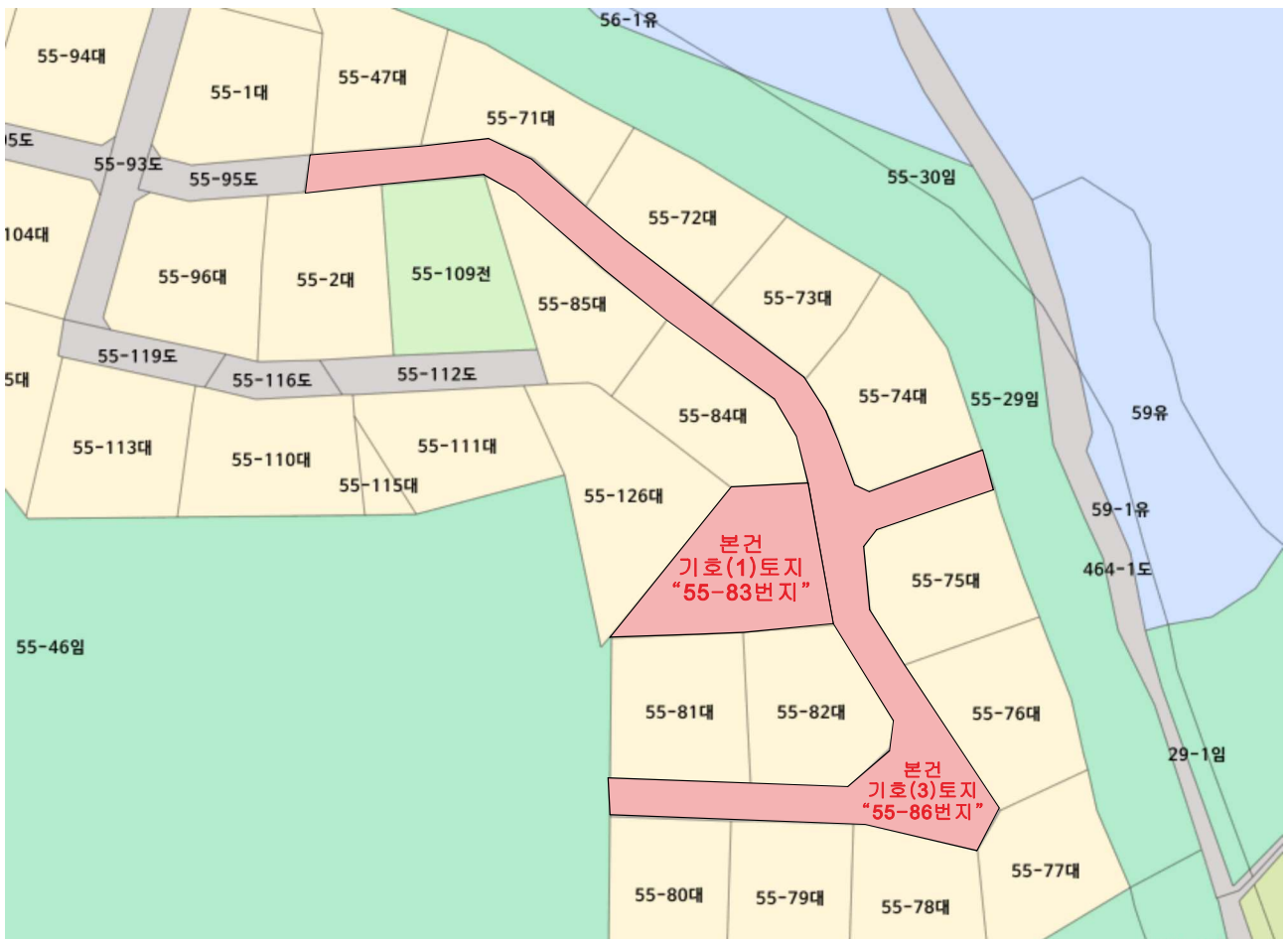
(A)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음봉면 신휴리 55-56
 [대,생산관리,세각(가)]
 @ 184,300원/㎡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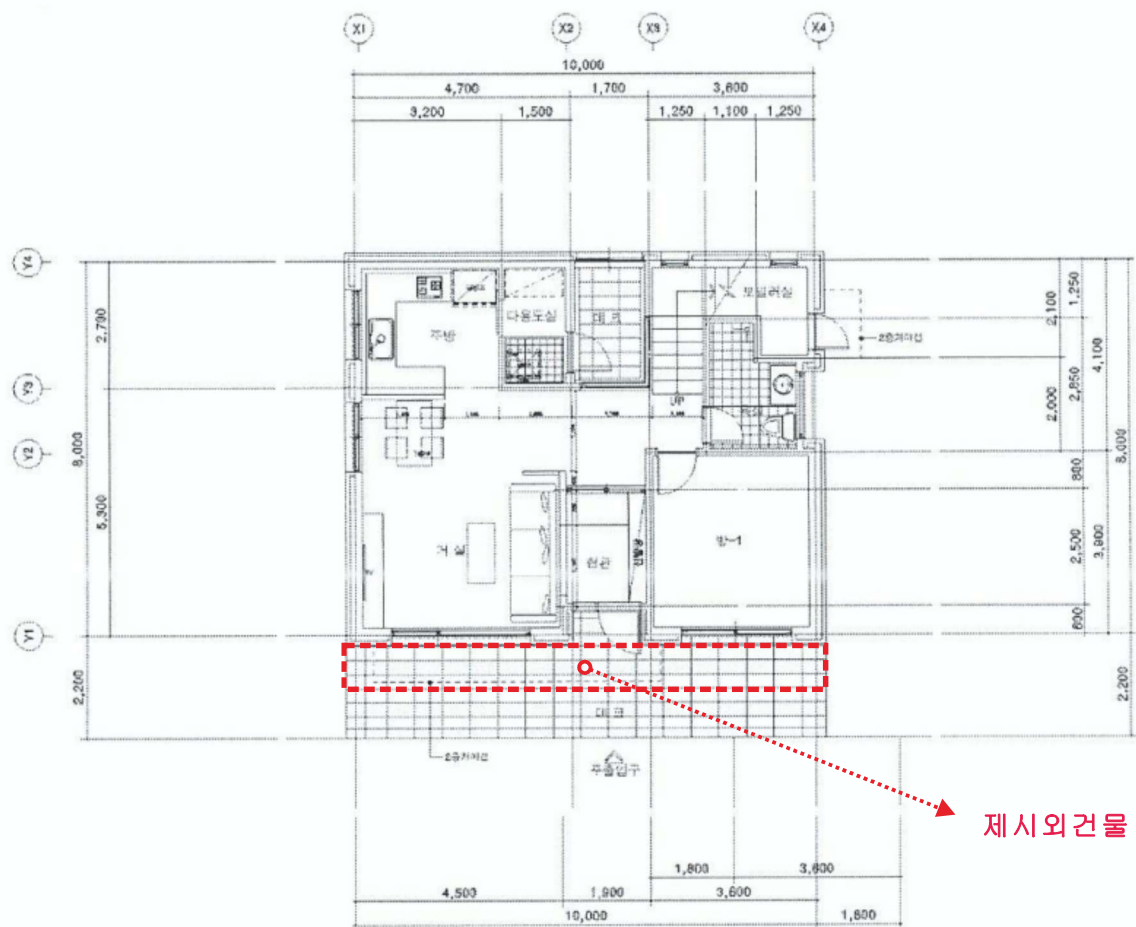


No Scale



지적 및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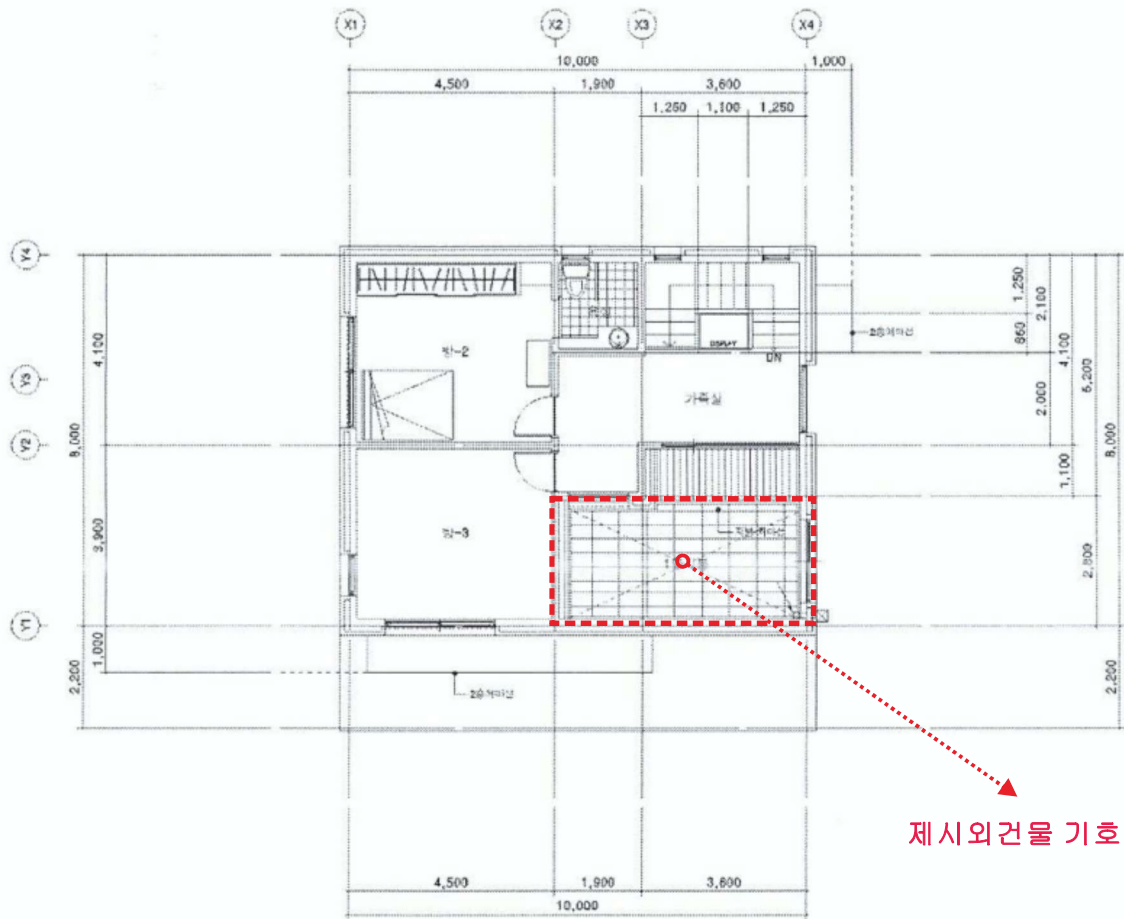
<기호(2) 건물 : 1층(공부면적사정) : 78.86㎡ >

< 제시외 건물 >

기호 ㉠ : 벽체이용 판넬지붕 차양(바닥 목재데크 포함) (1층 소재) 약 10㎡

지적 및 건물개황도

No Scale



<기호(2) 건물 : 2층(공부면적사정) : 64.6㎡>

< 제시외 건물 >

기호 ㉞ : 벽체이용 판넬지붕 참고 등 (2층 소재) 약 15.4㎡

사 진 용 지



기호(1)토지 및 기호(2)건물 전경1



기호(1)토지 및 기호(2)건물 전경2



기호(1) 토지 전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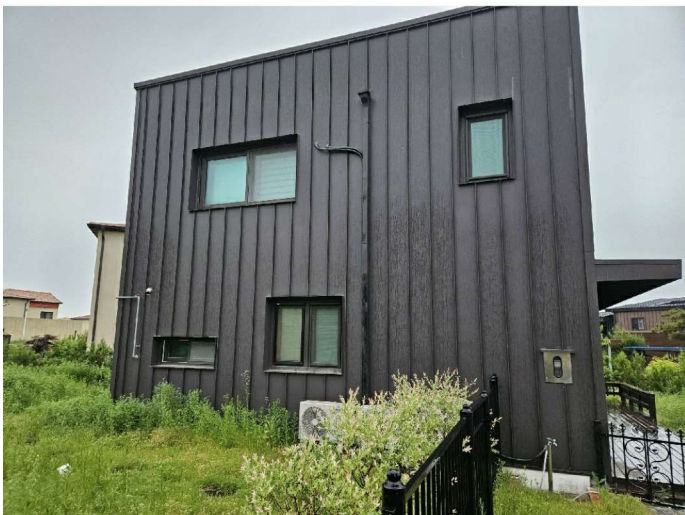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기호(1) 토지 전경2(후면 부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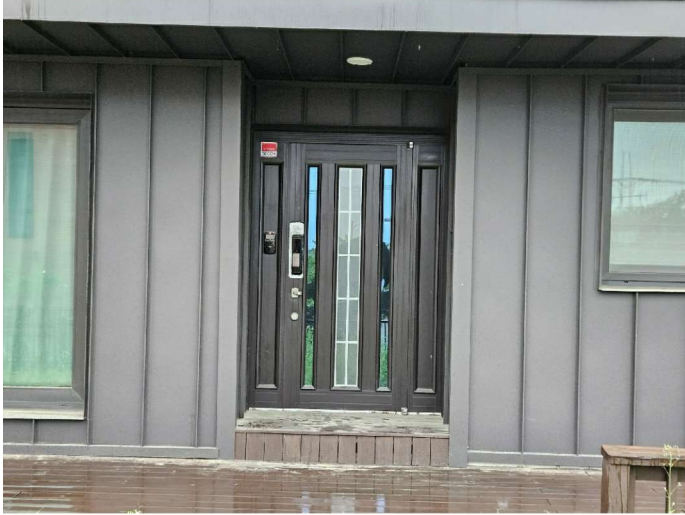


기호(2) 건물 외부 전경(전면)



기호(2) 건물 외부 전경(측면)

사 진 용 지



기호(2)건물 현관문 전경



기호(2)건물 내부 전경1



기호(2)건물 내부 전경2

사 진 용 지



기호(3) 토지 전경1



기호(3) 토지 전경2



제시외건물 기호 ㉠ 전경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 기호 ㉠ 전경



제시외수목 기호 ㉡ 전경1



제시외수목 기호 ㉢ 전경2